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목 차

<요 약>

I. 검토배경	1
II.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2
1. 진입규제의 정의와 논거	2
2. 진입규제의 유형과 사례	3
3. 산업별 진입규제 현황	6
4. 산업별 창업현황	12
5.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사이의 관계	14
III. 시사점과 진입규제 개혁방안	18
1. 시사점	18
2. 진입규제 개혁방안	19
<부 록> I. 산업별·유형별 진입규제 현황	21
II. 산업별·유형별 진입규제 비중	22
III. 강 진입규제 개혁에 따른 업종별 일자리 창출사례	23
IV. 산업별 진입규제의 유형 및 근거법령	27
<참고문헌>	57

- 이 자료는 본회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308 FAX : 02-6234-5246 E-mail : ochoi@fki.or.kr

요 약

□ 진입규제 개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

-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부각됨
- 고용창출은 경제정책이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이며 진입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 특정분야에 진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는 강 진입규제와 약 진입규제로 분류

- 진입규제는 경제적 규제의 하나로 특정산업 또는 분야에 진출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강 진입규제에는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이 포함되며 약 진입 규제에는 등록과 신고가 포함됨
 - 공항운영업은 정부독점, 담배소매업은 지정, 주류 제조·판매업은 면허, 직원훈련기관은 승인 규제를 받는 산업의 예
 - 택배업과 보험업은 허가, 은행업은 인가, 건설업과 학원은 등록규제를 받으며, 여관과 음식점 등은 신고 진입규제를 받음

진입규제의 유형

구분		진입규제
강 진입규제	정부가 독점적 지위 부여	정부독점, 지정
	기준을 정해 진입 적격여부 심사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약 진입규제	피규제자의 진입의사에 따라 정부가 수동적으로 관리	등록, 신고

□ 1,145개 세세분류 업종 중 51.5%에 진입규제, 21.8%에 강 진입규제 존재

- 표준산업 세세분류 기준 1,145개 산업 중 590개 산업(51.5%)에 법령상 진입 규제가 존재하며, 250개 산업(21.8%)에는 인허가·승인 등 강한 진입규제가 존재
- 산업별 진입규제 비중(강 규제 비중+ 약 규제 비중)은 전기·가스·수도, 건설, 숙박·음식, 보건(각 100.0%)과 금융(97.0%)이 높고, 강 진입규제 비중은 전기·가스·수도(100.0%), 금융·보험(75.8%)과 광업(76.5%), 운수업(60.9%) 등이 높음

* 산업별 진입규제 비중은 산업별 소속업종 중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 수를 전체 소속 업종 수로 나누어 산출

* 강 규제비중은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의 6개 개별 규제비중을, 약 규제비중은 등록규제 비중과 신고규제 비중을 합산한 값

□ 유형별 규제비중은 등록, 허가 순으로 크며 제조업은 등록의 비중이 높음

- 전산업 기준 유형별 진입규제 비중 크기는 등록(19.6%), 허가(12.2%), 신고(10.1%)의 순
- 제조업의 유형별 규제비중은 등록(11.8%)과 허가(11.1%), 신고(3.5%)의 순이며, 서비스업은 등록(21.5%), 신고(16.7%), 허가(12.0%)의 순으로 높음

□ 면허는 운수, 허가는 전기가스수도, 인가는 교육과 금융, 등록은 건설 등이 두드러짐

- 강규제인 면허규제 비중은 운수(47.8%), 허가는 전기·가스·수도(77.8%), 인가는 교육(44.5%)과 금융·보험(30.3%) 등의 산업에서 그 비중이 높음
- 약 규제인 등록규제는 건설업(100.0%), 신고규제는 숙박·음식점업(70.8%) 등에서 뚜렷

□ 진입률은 전기·가스·수도,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등의 산업이 높음

- 산업부문별 진입률은 전기·가스·증기·수도업(32.0%)이 가장 높고, 서비스(14.6%), 광업(11.8%), 제조(10.8%), 건설(9.6%)의 순
- 대분류 기준 산업별 진입률이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32.0%), 금융·보험(23.8%), 교육(21.2%),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20.7%) 등의 순

□ 강 진입규제 비중이 1%p 낮아지면 진입률은 0.0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산업 중분류 기준에 의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강한 진입규제 비중과 진입률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산업별 특성 제어를 위한 재무구조와 수익률 등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회귀분석의 필요성 제기
- 회귀분석 결과, 강한 진입규제 비중의 회귀계수가 -0.0462로 추정되어,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1%p 하락하면 진입률이 0.0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 진입규제 개혁 시 신생기업 6.4만 개와 33.2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강 진입규제 비중이 0으로 변화될 경우와 10%p 감소할 경우의 2가지 진입규제 개혁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
- 강 규제를 100% 철폐하거나 약 규제로 변경시킬 경우 진입률이 각각 1%p, 0.5%p 상승하고 이에 따라 6.4만 개의 신생기업과 33.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강한 진입규제 개선 시나리오별 일자리 창출효과 시산

규제개선 시나리오	활동업체 수 (개)	신생사업체 수 (개)	진입률 (%)	추가 신생업체 수 (개)	신규 고용창출 (명)
기준	5,377,482	748,691	13.9	-	-
강 규제 철폐	5,441,119	812,238.1	14.9	63,637.1	331,842.4
강 규제 10단위 감소	5,406,488	777,696.5	14.4	29,005.5	151,252.4

주 1 : 진입률은 진입규제 개혁 시나리오별 강 규제 비중 증가치에 강 규제 비중이 진입률에 미치는 회귀계수(-0.0416)를 곱하여 산출

2 : 추가 신생업체 수는 진입률 계산식($\frac{\text{신생업체 수}}{\text{활동업체 수}} \times 100$)에서 규제개혁에 따른 추가 신생업체 수를 x라고 할 때 진입률 산식($\frac{x + \text{신생업체 수}}{x + \text{활동업체 수}} \times 100$)을 변형하여 산출

3 : 신규 고용창출은 추가 신생업체 수에 전산업 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5.21명을 곱하여 산출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반적인 진입규제 개선 추진 필요

- 화장품,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경우 강한 진입규제를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한 후, 전산업 수준을 능가하는 신생기업 수와 일자리 증가를 경험한 사례가 있음
 - ※ 사례 :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1.7%로 전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고,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산업 평균(9.3%)의 8.5배에 달함
- 진입률은 낮으면서 강 규제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대분류 기준 제조업에 소속) 등을 중심으로 진입규제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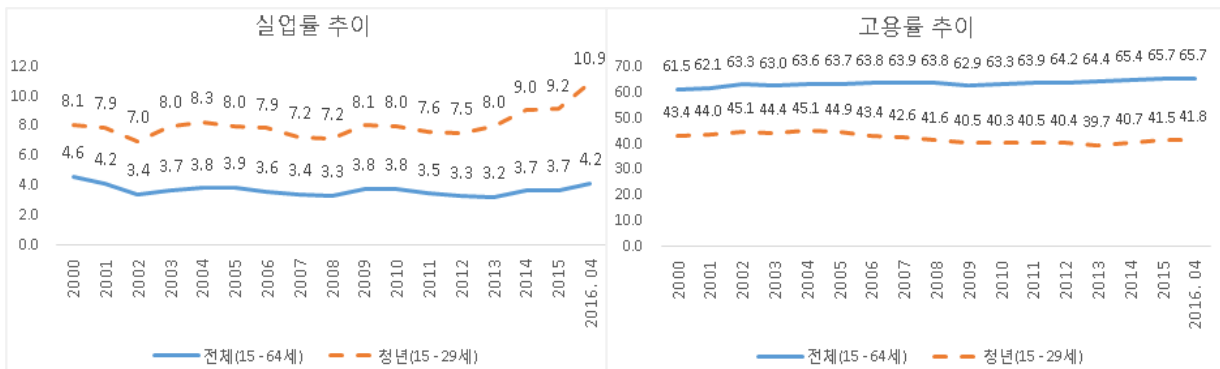
□ 진입규제 전수조사 및 개혁 로드맵 작성 등 진입규제 개혁노력 필요

- 법령 외에 고시·지침·조례에 규정된 모든 진입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진입규제 개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입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활용하고 모든 존속 진입규제에 대한 규제지속 여부 재검토 기한 부여,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의무 부과 등의 대책 추진

I 검토배경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부각

- 최근 중국의 실물·금융 불안지속과 유가 추가하락으로 인한 자원국의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 전반적인 경기활력이 위축
 -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경제의 급속둔화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된 가운데 국내외 수요부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기부진 지속
 - * IMF는 '16년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을 '15.1월 3.6%에서 '16.1월 3.4%로 하향 조정
 - 대외수요의 정체와 중국의 추격, 엔저추세 등으로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전은 지체
-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실업률과 고용률 등 청년 고용지표가 악화되어 취업 애로계층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
 - 전체 실업률은 3~4%대에 머물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00년 이후 7.2~8.1% 수준에서 등락하다 '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16년 4월 현재 10.9%로 상승
 - 청년 고용률은 '04년 45.1%를 정점으로 하향추세로 전환된 후, '16년 4월 현재 41.8% 수준에 머뭄



□ 진입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

- 고용창출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정책이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
- 진입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 *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워져 신규 진입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

□ 진입규제와 일자리간 관계를 규명하고 진입규제 개혁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1,145개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 세세분류 기준 법령상 진입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진입규제와 일자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진입규제 개혁방향을 제시

II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1. 진입규제의 정의와 논거

□ 진입규제는 특정 산업 또는 분야에 진출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

- 진입규제는 일정한 분야에서 기업의 사업 참여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매우 강력한 규제로서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 공익이론과 과당경쟁 이론 등이 진입규제의 논거를 뒷받침
 - 규제의 공익(Public Interest) 이론¹⁾은 진입규제가 부실제품 공급과 환경오염 등 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과당경쟁 이론²⁾은 자연독점 산업의 중복투자를 통제해야 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경쟁기업 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봄

□ 공공선택이론은 진입규제가 공익보다는 이익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공공선택 이론의 한 흐름인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론은 진입규제가 공익보다는 이미 시장에 진출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
 - * 전문 자격사 제도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문 자격사 집단은 로비 등을 통해 관련법과 규정 등이 전문 자격사 집단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되도록 행동
- 공공선택 이론의 다른 주류인 통행료 징수소(Tollbooth) 이론은 규제가 정치인과 관료들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 허가, 승인 등의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료들이 신규 기업의 진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진입허용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봄

1) 경제학자 Pigou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소비자가 믿을 만한 공급자로부터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엄격한 진입규제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

2) '80년대 이후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제기된 이론으로 Stiglitz는 시장이 불완전하고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R&D 지출과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후생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경쟁증진이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경제학의 통설에 의문을 제기

2. 진입규제의 유형과 사례

□ 진입규제는 규제강도에 따라 강 진입규제와 약 진입규제로 분류 가능

- 강 진입규제에는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이 포함됨
 - * 정부에 의해 사전 진입할 사업자가 정해지는 유형 : 정부독점, 지정
 -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입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유형 : 면허, 허가, 인가, 승인
- 약 진입규제에 속하는 등록과 신고의 경우 피 규제자의 참여의사에 따라 정부가 진입을 수동적으로 관리³⁾

진입규제의 유형

구분		진입규제
강 진입규제	정부가 독점적 지위 부여	정부독점, 지정
	기준을 정해 진입 적격여부 심사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약 진입규제	피규제자의 진입의사에 따라 정부가 수동적으로 관리	등록, 신고

□ 공항운영업과 우편업은 ‘정부독점’, 담배소매업 등은 ‘지정’ 진입규제를 받음

- 정부기관, 법원, 검찰 등 정부독점이 명백한 분야 외에도 공항운영업은 한국 공항공사법, 우편업은 우편법에 의해 ‘정부독점’의 진입규제를 받음

‘정부독점’ 진입규제 산업의 예

세세분류 산업명	관련 법령
공항운영업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우편업	우편법 제2조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3조

- 담배소매업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의해, 사적지관리 운영업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 진입규제를 받음

3) 유형은 등록과 신고의 약 진입규제 형태이지만 실질적인 규제운용은 강 진입규제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으나 규제정책 변화에 따라 본래의 약 진입규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상의 강 진입규제와는 구분됨

‘지정’ 진입규제 산업의 예

세세분류 산업명	관련 법령
담배소매업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연극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사적지 관리 운영업	문화재보호법 제54조

□ 주류 제조·판매업 등은 ‘면허’, 직원훈련기관은 ‘승인’ 규제를 받는 대표산업

- 양식어업, 주류 제조·도매, 시내버스 운송업 등 각종 운송업과 유사 의료업 등은 ‘면허’ 진입규제를 받는 대표산업
- 직원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의해 ‘승인’ 규제를 받음

‘면허’ 진입규제 산업의 예

세세분류 산업명	관련 법령
해면 양식어업	수산업법 제8조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주세법 제6조
주류 도매업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시내버스 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유사 의료업	의료법 제81조

□ 축산업, 광업, 원양어업 등은 ‘허가’, 육림업과 금융업 등은 ‘인가’ 필요

- 육우, 벌목, 원양어업, 광업, 소금 채취업, 의료기기 제조, 발전, 가스제조, 유흥주점, 택배, 보험, 의약품 제조, 병원, 낚시장 운영 등은 ‘허가’ 산업

‘허가’ 진입규제 산업의 예

세세분류 산업명	관련 법령
젓소 사육업	축산법 제22조 제1항, 축산법시행령 제13조
벌목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원양어업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석탄광업	광업법 제3조, 제15조 제1항
건설용 석재 채굴업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소금 채취업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완제의약품 제조업	약사법 제31조
화력발전업	전기사업법 제7조
일반유흥 주점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 제2호
경비·경호서비스	경비업법 제4조
종합병원	의료법 제48조
낚시장 운영업	낚시관리및육성법 제10조 제1항

- 육림과 용수공급, 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학교, 보육시설 운용, 스포츠 서비스 등은 ‘인가’ 진입규제를 받음

‘인가’ 진입규제 산업의 예

세세분류 산업명	관련 법령
육림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 제36조 제1항
생활용수 공급업	수도법 제17조
국내은행	은행법 제8조
증권 중개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제11조
일반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보육시설 운영업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산업단체	산업발전법 제38조

□ 식료품 제조, 건설, 학원 등은 ‘등록’, 곡물 도정·제분, 여관, 음식점 등은 ‘신고’ 산업

- 종자 및 묘목 생산, 식료품 제조, 화장품 제조, 하·폐수 처리, 토양 및 지하수 정화, 건설, 자동차 판매, 호텔, 여행사, 학원, 장의관련 서비스 등은 ‘등록’ 규제 산업

‘등록’ 진입규제 산업의 예

세세분류 산업명	관련 법령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종자산업법 제37조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골재채취법 제2조, 제14조
빵류 제조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
하수처리업	하수도법 제19조의 2
아파트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백화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호텔업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외국어 학원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제6조 제1항
노래연습장 운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 제12조 제2항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할부거래에 관한법 제18조 제1항

- 축산 관련 서비스, 곡물 도정·제분, 육류 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여관, 제과점, 음식점, 일반 의원, 수영장 운영, 이용업, 세탁업 등은 ‘신고’ 규제 산업

‘신고’ 진입규제 산업의 예

세세분류 산업명	관련 법령
축산 관련 서비스업	축산법 제17조
곡물 도정업	양곡관리법 제2조, 제19조 제1항
육류 도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빵 및 과자류 소매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전자상거래업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 제12조
방문판매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 제5조 제1항
여관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한식 음식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세세분류 산업명	관련 법령
수영장 운영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일반 의원	의료법 제33조 제3항
이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세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3. 산업별 진입규제 현황

1) 산업별 진입규제 비중 계산방법

□ 세세분류 업종별 법령상 진입규제 파악 후 상위 산업 유형별 진입규제 비중을 계산

- 한국 표준산업 세세분류 기준 1,145개 산업을 대상으로 법령상 존재하는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등록 등 진입규제를 파악

한국 표준산업 분류 현황

(단위 : 업종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A 농림어업	3	8	21	34
B 광업	4	7	12	17
C 제조	24	83	180	461
D 전기·가스·수도	2	4	6	9
E 폐기물·환경복원	3	5	11	15
F 건설	2	7	14	42
G 도·소매	3	20	58	164
H 운수	4	11	20	46
I 숙박·음식점	2	4	8	24
J 출판·영상·정보 등	6	11	25	42
K 금융·보험	3	8	15	33
L 부동산·임대	2	6	13	21
M 전문·과학·기술	4	13	19	50
N 사업시설·사업지원	2	7	13	21
O 행정·국방·사회보장	1	5	8	25
P 교육서비스	1	7	16	29
Q 보건·사회복지	2	6	9	21
R 예술·스포츠·여가	2	4	17	43
S 협회·수리·개인	3	8	18	43
T 자가소비 생산활동	2	3	3	3
U 국제·외국기관	1	1	1	2
서비스업	38	114	243	567
전산업	76	228	487	1,145

주 : 서비스업은 전체산업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 한국 표준산업 분류 대분류와 중분류 기준에 소속된 업종 중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의 수를 진입규제 유형별로 합산한 후 전체 소속업종 수로 나누어 진입규제 유형별 규제비중을 계산

유형별 규제비중 산출의 예(건설업)

- 한국 표준산업 대분류상 건설업은 중분류 기준 2개 업종, 소분류 기준 7개 업종, 세분류 기준 14개 업종, 세세분류 기준 42개 업종으로 구분됨
- 대분류 기준 건설업 등록 진입규제 비중은 법령상(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진입규제 파악결과 세세분류 기준 42개 업종이 전부 등록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text{건설업 등록규제 비중} = \frac{42(\text{등록 규제를 받는 하위 업종 수})}{42(\text{전체 하위 업종 수})} \times 100 = 100\%$$

- 전문직별 공사업과 함께 건설업 중분류 기준 산업인 종합건설업은 13개 세세분류 업종 모두 법령상(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록 규제를 받으므로

$$\text{종합건설업 등록규제 비중} = \frac{13(\text{등록 규제를 받는 하위 업종 수})}{13(\text{전체 하위 업종 수})} \times 100 = 100\%$$

- 건설업(대분류)과 종합건설업(중분류)의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등 다른 유형별 규제비중은 규제받는 하위 업종이 없으므로 모두 0.0%

□ 유형별 규제비중을 합산, 규제비중 계산 후, 100에서 이를 차감하여 무규제 비중 계산

- 대분류 또는 중분류 산업별로 정부독점, 지정 등 8개 진입규제 유형별 규제비중을 합산하여 산업별 전체 규제비중을 파악

$$\begin{aligned} * \text{건설업(대분류 기준)의 산업별 전체 규제비중 산출 예 : } & 0\%(\text{정부독점규제 비중}) + \\ & 0\%(\text{지정규제 비중}) + 0\%(\text{면허규제 비중}) + 0\%(\text{허가규제 비중}) + 0\%(\text{인가규제 비중}) \\ & + 0\%(\text{승인규제 비중}) + 100\%(\text{등록규제 비중}) + 0\%(\text{신고규제 비중}) = 100\% \end{aligned}$$

- 산업별로 100에서 산업별 전체 규제 비중을 차감하여 무규제 비중을 파악

$$* \text{건설업(대분류 기준) 무규제 비중 산출 예 : } 100\% - 100\%(\text{전체 규제 비중}) = 0\%$$

□ 산업별로 유형별 규제 비중을 규제강도에 따라 구분, 강 규제 및 약 규제 비중을 산출

- 산업별 강 진입규제 비중은 진입규제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의 6개 규제비중을 합산하여 계산

$$\begin{aligned} * \text{건설업(대분류 기준)의 강 진입규제 비중 산출 예 : 강 진입규제 비중} & = 0\%(\text{정부독점규제 비중}) + 0\%(\text{지정규제 비중}) + 0\%(\text{면허규제 비중}) + 0\%(\text{허가규제 비중}) \\ & + 0\%(\text{인가규제 비중}) + 0\%(\text{승인규제 비중}) = 0\% \end{aligned}$$

- 산업별 약 진입규제 비중은 등록과 신고의 규제비중을 합산하여 산출
* 건설업(대분류 기준)의 약 진입규제 비중 산출 예 : 약 진입규제 비중 = 100% (등록규제 비중) + 0%(신고규제 비중) = 100%

산업별·유형별 규제 비중 산출방법

- ① 한국 표준산업 분류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존재하는 법령상 진입규제를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로 구분하여 파악
- ② 한국 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및 중분류 산업별로 소속된 하위 업종 중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의 수를 진입규제 유형별로 파악
- ③ ②에서 파악된 진입규제 유형별 업종의 수를 소속된 전체 하위 업종 수로 나누어 진입규제 유형별 규제비중을 계산
- ④ 유형별 규제비중을 모두 합산하여 대분류 및 중분류 산업별 전체 규제 비중을 산출
- ⑤ 100에서 산업별 전체 규제 비중을 차감하여 무규제 비중을 산출
- ⑥ 전체 규제 비중을 규제강도별로 구분, 강 규제 비중과 무규제 비중을 계산

2) 산업별 현황

<산업부문별 현황>

□ 산업부문별 규제 비중의 크기는 건설, 전기·가스·수도, 광업, 서비스⁴⁾ 등의 순

-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의 진입규제 비중은 100.0%로, 전산업의 규제비중 51.5%를 큰 폭으로 상회
- 광업(88.2%)과 서비스업(66.7%), 농림어업(58.8%)의 규제 비중도 전산업 규제 비중(51.5%)보다 높았으나, 제조업(24.7%)은 전산업의 절반 수준을 하회

□ 전기·가스·수도와 광업, 농업,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강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음

- 전기·가스·수도(100.0%), 광업(76.5%), 농림어업(44.1%), 서비스업(28.9%)의 강 진입규제 비중은 전산업 강 진입규제 비중(21.8%)을 상회

4) 서비스업은 전체산업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 제조업(9.8%)과 건설업(0.0%)의 강 진입규제 비중은 전산업의 강 진입규제 비중 21.8%를 하회

산업부문별·진입규제 유형별 규제현황

(단위 : 세세분류 하위 업종 중 규제받는 업종 수, %)

구분	강규제							약규제			규제합계	무규제	총합계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가	허가	승인	소계	등록	신고	소계			
A 농림어업	0	0	2	1	12	0	15	3	2	5	20	14	34
비중	0.0	0.0	5.9	2.9	35.3	0.0	44.1	8.8	5.9	14.7	58.8	41.2	100.0
B 광업	0	0	0	0	13	0	13	2	0	2	15	2	17
비중	0.0	0.0	0.0	0.0	76.5	0.0	76.5	11.8	0.0	11.8	88.2	11.8	100.0
C 제조	0	0	7	0	38	0	45	52	17	69	114	347	461
비중	0.0	0.0	1.5	0.0	8.2	0.0	9.8	11.3	3.7	15.0	24.7	75.3	100.0
D 전기·가스·수도	0	0	0	2	7	0	9	0	0	0	9	0	9
비중	0.0	0.0	0.0	22.2	77.8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F 건설	0	0	0	0	0	0	0	42	0	42	42	0	42
비중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0.0	100.0
서비스	37	7	25	28	70	1	168	125	97	222	390	192	582
비중	6.4	1.2	4.3	4.8	12.0	0.2	28.9	21.5	16.7	38.1	67.0	33.0	100.0
전산업	37	7	34	31	140	1	250	224	116	340	590	555	1145
비중	3.2	0.6	3.0	2.7	12.2	0.1	21.8	19.6	10.1	29.7	51.5	48.5	100.0

주 1 : 비중 = (특정 산업 진입규제를 받는 하위 업종 수 / 특정 산업 하위 업종 수 × 100)
 주 2 : 서비스업은 전체산업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주 3 : 법령은 '15년 말 기준

<산업별 현황>

□ 1,145개 세세분류 업종 중 51.5%에 진입규제, 21.8%에는 강한 진입규제가 존재

- 1,145개의 표준산업 세세분류 업종 중 51.5%가 진입규제를 받고 있음
-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세세분류 업종 수 비중은 21.8%로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 수 비중 29.7%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전기가스수도, 건설 숙박음식 보건은 100% 진입규제를 받으며 금융도 진입규제 비중이 높음

- 국방과 국제·외국기관 등 정부부문을 제외하고 규제비중이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수도(100.0%), 건설(100.0%), 숙박·음식(100.0%), 보건(100.0%), 금융·보험(97.0%), 폐기물·환경복원업(93.3%) 등

- 규제 비중이 낮은 산업은 가구생산(0.0%), 제조(24.7%), 도·소매(36.0%) 등

□ 전기·가스·금융·보험과 광업, 운수업은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음

- 강 진입규제 비중⁵⁾이 높은 산업은 공공행정(100.0%), 전기·가스·수도(100.0%) 등 공공부문에 속한 산업과 금융·보험(75.8%), 광업(76.5%), 운수(60.9%) 등
- 건설(0.0%), 가구 내 생산(0.0%)은 강 진입규제가 없으며, 도·소매(9.1%), 부동산·임대(9.5%), 제조(9.8%) 등도 강 진입규제 비중이 낮은 산업

산업 대분류별 진입규제 비중

(단위 : 세세분류 하위 업종 중 규제받는 업종 수 비중, %)

대분류명	규제			무규제	합계
	강규제	약규제	계		
A 농림업	44.1	14.7	58.8	41.2	100.0
B 광업	76.5	11.8	88.2	11.8	100.0
C 제조	9.8	15.0	24.7	75.3	100.0
D 전기·가스·수도	100.0	0.0	100.0	0.0	100.0
E 폐기물·환경복원	60.0	33.3	93.3	6.7	100.0
F 건설	0.0	100.0	100.0	0.0	100.0
G 도·소매	9.1	26.8	36.0	64.0	100.0
H 운수	60.9	19.6	80.4	19.6	100.0
I 숙박·음식점	12.5	87.5	100.0	0.0	100.0
J 출판·영상·정보 등	19.0	45.2	64.3	35.7	100.0
K 금융·보험	75.8	21.2	97.0	3.0	100.0
L 부동산·임대	9.5	71.4	81.0	19.0	100.0
M 전문·과학·기술	10.0	44.0	54.0	46.0	100.0
N 사업시설·사업지원	9.5	42.9	52.4	47.6	100.0
O 행정·국방·사회보장	100.0	0.0	100.0	0.0	100.0
P 교육서비스	48.3	41.4	89.7	10.3	100.0
Q 보건·사회복지	38.1	61.9	100.0	0.0	100.0
R 예술·스포츠·여가	27.9	53.5	81.4	18.6	100.0
S 협회·수리·개인	23.3	53.5	76.7	23.3	100.0
T 자가소비·생활활동	0.0	0.0	0.0	100.0	100.0
U 국제·외국기관	100.0	0.0	100.0	0.0	100.0
서비스	28.9	38.1	67.0	33.0	100.0
전산업	21.8	29.7	51.5	48.5	100.0

주 : 서비스업은 전체산업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5) 세부업종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 수를 전체 업종수로 나눈 비중

2) 규제 유형별 현황

□ 규제 유형별 진입규제 비중의 크기는 등록, 허가, 신고의 순으로 나타남

- 전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유형별 진입규제 비중의 크기는 등록(19.6%), 허가(12.2%), 신고(10.1%)의 순
- 진입규제 비중이 낮은 순서로는 승인(0.1%), 지정(0.6%), 인가(2.7%) 등의 순

□ 제조업은 등록과 허가, 서비스업은 등록과 신고, 허가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제조업의 유형별 규제 비중은 등록(11.8%)과 허가(11.1%), 신고(3.5%)의 순이고, 서비스업은 등록(21.5%), 신고(16.7%), 허가(12.0%)의 순으로 높음
- 농림어업과 광업은 허가(36.3%, 76.5%)와 등록(8.8%, 11.8%)의 규제비중이 높으며 전기·가스·수도는 허가(77.8%)의 비중이 높고, 건설은 100% 등록 규제를 받고 있음

산업별 진입규제 비중

(단위 : 세세분류 하위 업종 중 규제받는 업종 수 비중, %)

구분	강규제						약규제	
	정부 독점	지정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A 농림어업	0.0	0.0	5.9	2.9	35.3	0.0	8.8	5.9
B 광업	0.0	0.0	0.0	0.0	76.5	0.0	11.8	0.0
C 제조	0.0	0.0	1.5	0.0	8.2	0.0	11.3	3.7
D 전가 가스·수도	0.0	0.0	0.0	22.2	77.8	0.0	0.0	0.0
E 폐기물 환경복원	0.0	0.0	0.0	0.0	60.0	0.0	33.3	0.0
F 건설	0.0	0.0	0.0	0.0	0.0	0.0	100.0	0.0
G 도·소매	0.0	1.2	0.6	0.0	7.3	0.0	16.5	10.4
H 운수	2.2	0.0	47.8	2.2	8.7	0.0	19.6	0.0
I 숙박·음식점	0.0	0.0	0.0	0.0	12.5	0.0	16.7	70.8
J 출판·영상·정보 등	2.4	2.4	0.0	0.0	14.3	0.0	14.3	31.0
K 금융·보험	21.2	0.0	0.0	30.3	24.2	0.0	21.2	0.0
L 부동산·임대	0.0	0.0	0.0	4.8	4.8	0.0	66.7	4.8
M 전문·과학·기술	0.0	0.0	0.0	0.0	10.0	0.0	24.0	20.0
N 사업·시설·사업지원	0.0	0.0	0.0	0.0	9.5	0.0	28.6	14.3
O 행정·국방·사회보장	100.0	0.0	0.0	0.0	0.0	0.0	0.0	0.0
P 교육·서비스	0.0	0.0	0.0	44.8	0.0	3.4	37.9	3.4
Q 보건·사회복지	4.8	0.0	4.8	4.8	23.8	0.0	0.0	61.9
R 예술·스포츠·여가	0.0	9.3	2.3	2.3	14.0	0.0	34.9	18.6
S 협회·수리·개인	0.0	0.0	0.0	2.3	20.9	0.0	20.9	32.6
T 자가소비·생산·활동	0.0	0.0	0.0	0.0	0.0	0.0	0.0	0.0
U 국제·외국기관	10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	6.4	1.2	4.3	4.8	12.0	0.2	21.5	16.7
전산업	3.2	0.6	3.0	2.7	12.2	0.1	19.6	10.1

주 : 서비스업은 전체산업 중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 정부독점 규제 비중은 국방·공공행정, 지정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에서 두드러짐

- 정부독점규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00.0%), 국제·외국기관(100.0%), 금융·보험(21.2%) 등
- 지정규제 비중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9.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면허는 운수, 허가는 전기·가스·수도과 광업, 인가는 교육과 금융이 높음

- 면허규제 비중은 운수(47.8%)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4.8%)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허가는 전기·가스·수도(77.8%), 광업(76.5%), 폐기물·환경복원(60.0%), 농림어업(36.3%), 금융·보험(24.8%)의 규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가규제 비중은 교육서비스(44.8%)와 금융·보험(30.3%), 전기·가스·수도(22.2%)가 상대적으로 높음

□ 등록규제 비중은 건설, 신고 규제 비중은 숙박·음식점이 두드러짐

- 등록규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건설(100.0%), 부동산 임대(66.7%), 교육서비스(37.9%) 등
- 신고규제 비중의 크기는 숙박·음식(70.8%), 보건·사회복지 서비스(61.9%),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32.6%) 등의 순

□ 건설과 도·소매 등은 등록, 운수는 면허, 금융·보험은 인가 규제 비중이 높음

- 산업별로 비중이 가장 높은 진입규제 형태는 농림어업과 광업, 전기·가스·수도, 폐기물·환경복원은 허가 (35.3%, 76.5%, 77.8%, 60.0%), 건설은 등록(100.0%), 도매 및 소매는 등록(19.6%), 운수는 면허(47.8%)규제임
- 숙박·음식점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31.0%)는 신고규제 비중, 금융·보험(30.3%)과 교육서비스는(44.8%) 인가규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임대(66.7%)는 등록규제 비중이 가장 높음

4. 산업별 창업현황

<부문별 현황>

□ 산업부문별 진입률 크기는 전기·가스·증기·수도, 서비스, 광업, 제조, 건설 순

- 신생기업이 활동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진입률⁶⁾은 13.9%('13년)
- 전체 활동기업 5.4백만 개 중 13.9%인 74.9만 개가 당해 연도에 새로 창업⁷⁾

6) 진입률은 신생기업 수를 활동기업 수로 나눈 백분율(신생기업 수 / 활동기업 수 x 100)

7) 통계청 기업생멸통계

- 산업부문별 진입률 크기는 전기·가스·증기·수도(32.0%), 서비스(14.6%), 광업(11.8%), 제조(10.8%), 건설(9.6%) 등의 순

산업부문별 활동기업 진입·소멸 현황

(단위 : 천 개, %)

구분	활동	신생	소멸	진입률	퇴출률
B 광업	1.7	0.2	0.2	11.8	11.9
C 제조	474.7	51.0	40.7	10.8	8.6
D 전기·가스·수도	4.5	1.5	0.2	32.0	3.5
F 건설	343.6	32.8	27.1	9.6	7.9
서비스	4,553.0	663.2	596.1	14.6	13.1
전산업	5,377.5	748.7	664.3	13.9	12.4

주 1 : '13년 기준 통계청 기업생멸통계에 기초

2 : 서비스업은 전체산업 중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산업별 현황>

□ 산업별 진입률 크기는 전기·가스·증기·수도,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등의 순

- 산업별 진입률이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32.0%), 금융·보험(23.8%), 교육(21.2%),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20.7%) 등의 순
- 산업별 진입률이 낮은 산업은 운수(7.6%), 폐기물·환경복원(8.4%), 보건·사회 복지 서비스(8.6%), 건설(9.6%) 등임

산업별 활동기업 진입·소멸 현황

(단위 : 천 개, %)

구분	활동	신생	소멸	진입률	퇴출률
B 광업	1.7	0.2	0.2	11.8	11.9
C 제조	474.7	51.0	40.7	10.8	8.6
D 전기·가스·수도	4.5	1.5	0.2	32.0	3.5
E 폐기물·환경복원	8.4	0.7	0.6	8.4	7.2
F 건설	343.6	32.8	27.1	9.6	7.9
G 도·소매	1,315.5	206.7	192.3	15.7	14.6
H 운수	546.5	41.6	34.5	7.6	6.3
I 숙박·음식점	744.6	147.2	139.2	19.8	18.7
J 출판·영상·정보 등	63.6	12.6	9.2	19.8	14.5
K 금융·보험	20.5	4.9	4.6	23.8	22.4
L 부동산·임대	1,094.7	128.3	109.2	11.7	10.0
M 전문·과학·기술	123.9	20.1	13.6	16.2	11.0
N 사업시설·사업지원	74.9	15.5	11.5	20.7	15.4

구분	활동	신생	소멸	진입률	퇴출률
P 교육서비스	132.5	28.1	24.2	21.2	18.3
Q 보건·사회복지	68.8	5.9	4.7	8.6	6.8
R 예술·스포츠·여가	106.7	20.0	21.1	18.8	19.7
S 협회·수리·개인	252.5	31.5	31.4	12.5	12.4
서비스	4,553.0	663.2	596.1	14.6	13.1
전산업	5,377.5	748.7	664.3	13.9	12.4

주 1 : '13년 기준 통계청 기업생멸통계에 기초

2 : 서비스업은 전체산업 중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5.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사이의 관계

<분석방법>

□ 표준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강 진입규제가 진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초통계 분석 외에 우선 다른 통제변수 없이 관심변수인 강한 진입규제 비중과 진입률 두 변수사이만의 선형적 관계를 분석하는 상관분석을 시행
- 강한 진입규제 비중 외에 재무구조와 수익률 등 진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강 진입규제 비중이 진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추진⁸⁾

□ 이용 자료가 한 시점·多産業 자료로 구성된 점을 감안한 회귀 분석법 적용

- 분석에 이용할 자료가 특정 시점의 여러 산업에 대한 자료로 구성된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표본자료들이 동일한 분산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분산 일치 추정치⁹⁾를 얻을 수 있는 분석법을 적용
- 회귀분석에서 영향을 받는 변수¹⁰⁾인 진입률이 재무구조와 수익률 등 영향을 주는 변수¹¹⁾로 설정한 변수에 반대로 영향을 줄 가능성¹²⁾을 제어하기 위한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¹³⁾을 적용

8) 상관분석은 두 변수사이만의 선형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이변수 통계 분석기법으로 두 변수들간 영향을 주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 반면, 회귀분석은 다 변수 분석이 가능하며 영향을 받는 변수(내생변수)와 영향을 주는 변수들(설명변수)을 구분

9) 이분산 일치 추정치(Heteroscedasticity Consistent estimator)는 최소자승 추정방법으로 얻은 추정치가 횡단면 자료 이용 등 분석에 이용된 자료들의 특성으로 인해 동분산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교정한 추정치를 말함. 이분산 일치 추정치는 강건오차를 이용한 추정치라 할 수 있음

10) 회귀분석에서 영향을 받는 변수를 내생변수라 함

11) 회귀분석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설명변수 또는 독립변수라고 함

12)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가 내생변수에 의해 역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 또는 내생적 설명변수의 문제라고 함

13) 내생적 설명변수가 존재할 경우 통상적인 최소자승 추정법에 의한 추정치는 편의를 가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단계 최소자승법 또는 도구변수 추정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교정함. 2단계 최소자승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내생적 설명변수를 내생변수로 하고 적합한 독립변수(이를 도구변수라 함 예: 내생적 설명변수의 과거치)를 선택, 회귀분석을

<이용자료 및 기초통계>

□ 기초자료로 산업 중분류 기준 강 규제 비중, 진입률, 재무구조 변수와 수익률 변수를 활용

- 산업별 진입률은 통계청 생멸통계, 재무구조 변수인 부채비율과 수익률 변수인 매출액순이익률은 한국은행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이용
- 상관분석에는 강 진입규제 비중과 진입률만을 이용하였고, 회귀분석에는 영향을 받는 변수로 진입률,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강 진입규제 비중 외에 부채비율과 매출액 순이익률을 이용¹⁴⁾

이용자료와 기초통계

구분	평균	표준 오차	중앙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통계 출처
강 진입규제 비중(15년 말)	18.1	4.2	8.5	28.1	0.0	100.0	세세분류 기준 법령상 진입규제 조사(전경련)
진입률(13)	12.6	0.7	11.1	4.6	5.9	23.8	통계청 생멸통계
부채비율(13)	116.3	13.0	104.7	86.0	2.4	548.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순이익률(13)	2.4	0.7	2.6	4.6	-9.7	21.2	
부채비율(12)	155.6	18.2	113.4	120.5	46.9	622.4	
매출액 순이익률(13)	3.0	0.5	3.3	3.1	-6.4	9.7	
서비스업 임의변수	0.5	0.1	0.0	0.5	0.0	1.0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에 기초

주 : 서비스업 임의변수는 비농림어업·광업·제조업의 경우=0, 다른 산업의 경우는 1의 값을 가짐

<상관분석 결과>

□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강 진입규제 비중과 진입률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음

- 상관분석 결과, 강 진입규제 비중과 진입률 사이의 상관계수가 -0.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신뢰성이 낮아 두변수가 뚜렷한 역의 관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행하여 추정치를 얻은 후, 2단계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로 1단계에서 얻은 추정치를 이용하는 회귀분석 방법을 말한다
 14) 2단계 최소자승법을 활용하므로 설명변수인 부채비율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2013년과 2012년 두 개 년도의 자료를 이용함. 강 진입규제 비중의 경우에도 내생변수인 진입률이 강 진입규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2014년 말 기준의 강 진입규제 통계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2014년 말 기준의 강 진입규제 비중이 2015년 말 기준에 비해 중분류 기준으로 큰 폭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강 진입규제 비중 변수의 경우에는 도구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 2015년 말 기준 변수를 그대로 이용함

강 진입규제 비중과 진입률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강규제 비중(2013)	진입률(2013)
강규제 비중(2013) (유의확률)	1 (-)	-0.1966 (0.2008)
진입률(2013) (유의확률)	-0.1966 (0.2008)	1 (-)

- 강 진입규제 비중과 진입률 간의 역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가 산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재무구조와 수익률 등의 변수를 통해 산업별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회귀분석의 필요성 대두

<회귀분석 결과>

□ 강 진입규제 비중이 1%p 낮아지면 진입률은 0.0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강한 규제가 진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강한 진입규제 비중과, 매출액 순이익률, 서비스업 임의변수가 진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강건오차 2단계 최소자승법)¹⁵⁾
- 강한 진입규제 비중의 회귀계수가 -0.0462로 추정되어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1%p 하락하면 진입률이 0.0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강한 진입규제가 산업별 진입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구분	OLS (최소자승)	OLS(최소자승, 강건오차)	TSLS(2단계 최소자승)	TSLS(2단계 최소자승, 강건오차)
절편항	12.22** (1.258)	12.72** (1.236)	10.70** (2.511)	10.70** (1.363)
강한 진입규제 비중	-0.05925** (0.02296)	-0.07057** (0.01172)	-0.04618 (0.03011)	-0.04618** (0.01782)
부채비율	-0.01284 (0.007841)	-0.02347** (0.007382)	-0.0008200 (0.01768)	-0.0008200 (0.01150)
매출액 순이익률	0.1577 (0.1349)	0.2082* (0.1057)	0.2758 (0.2643)	0.2758* (0.1445)
서비스업 임의변수	5.647** (1.323)	6.245** (0.7813)	4.778** (1.777)	4.778** (1.875)

주 1 : 강건오차 TSLS는 설명변수인 매출액 순이익률 등 경영지표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변수인 진입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외생변수의 내생성)과 횡단면 자료에 따른 이분산 문제 제어 가능

2 : ()은 표준오차

3 : 서비스업 임의변수는 서비스업이면 1, 아닌 경우 0의 값을 가짐

4 : ***는 1%, **는 5% 유의수준에서 추정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뜻함

15) 최소자승법과 이분산 일치 최소자승법(강건오차 최소자승법), 2단계 최소자승법, 이분산 일치(강건오차) 2단계 최소자승법의 네 가지 추정방법에 의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이분산 가능성과 내생적 설명변수의 문제점을 제어할 수 있는 이분산 일치 2단계 최소자승법(강건오차 2단계 최소자승법)의 결과를 최종 분석결과로 채택함

<일자리 창출효과 추산결과>

□ 강 진입규제 개혁 시 신생기업 6.4만 개와 33.2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강 진입규제 비중이 0으로 변화될 경우와 10%p 감소할 경우의 두 진입규제 개혁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
- 강규제를 100% 철폐하거나 약 규제로 변경시킬 경우 6.4만 개의 신생기업, 33.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개혁을 통해 강 진입규제 비중이 10%p 낮아지면 2.9만 개의 신생기업, 15.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¹⁶⁾

강한 진입규제 개선 시나리오별 일자리 창출효과 시산

규제개선 시나리오	활동업체 수(개)	신생사업체 수(개)	진입률 (%)	추가 신생업체 수 (개)	신규 고용창출 (명)
기준	5,377,482	748,691	13.9	-	-
강 규제 철폐	5,441,119	812,238.1	14.9	63,637.1	331,842.4
강 규제 10단위 감소	5,406,488	777,696.5	14.4	29,005.5	151,252.4

주 1 : 진입률은 진입규제 개혁 시나리오별 강 진입규제 비중 증가치에 강 진입규제 비중이 진입률에 미치는 회귀계수(-0.0416)를 곱하여 산출

2 : 추가 신생업체 수는 진입률 계산식($\frac{\text{신생업체 수}}{\text{활동업체 수}} \times 100$)에서 규제개혁에 따른 추가 신생업체 수를 x라고 할 때 진입률 산식(새로운 진입률 = $\frac{x + \text{신생업체 수}}{x + \text{활동업체 수}} \times 100$)을 변형하여 구함

3 : 신규 고용창출은 추가 신생업체 수에 전산업 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5.21명을 곱하여 산출

16) 첫 번째 진입규제 개혁 시나리오는 모든 강 진입규제를 100% 없애거나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하는 개혁을 통해 현재 전산업 기준 21.8%인 강 규제 비중이 0.0%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진입규제 개혁으로 강 규제 비중이 10%p 감소(21.8% → 11.8%)하는 것으로 가정

Ⅲ 시사점과 진입규제 개혁방안

1. 시사점

□ 강한 진입규제를 개혁하면 33.2만 개의 고용창출 등 경기진작 가능

- 정부의 독점과 지정,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등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는 새로운 기업이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한 진입규제를 개혁할 경우 최대 6.4만 개의 기업과 직접고용만 33.2만 개가 새로이 창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진입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인 것으로 판단

□ 화장품,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강 진입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 사례 존재

- 화장품 제조업은 '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07년까지 사업체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30%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각각 8.3%, 17.2%)을 크게 상회
-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98년 면허규제를 등록규제로 변경한 후, '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이 201.7%를 기록, 전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으며,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산업 평균(9.3%)의 8.5배에 달함

강 진입규제 개혁에 따른 업종별 일자리 창출효과 사례

<사례 1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제조업은 본래 약사법에 의해 허가 업종으로 규제를 받아오다 '00년 7월 시행된 화장품법에 의해 신고제로 변경됨
- 완화(허가 → 신고) 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대폭 증가
 - 사업체 수 : 220개('00년) → 451개('07년, 105.0% 증가)
 - 종사자 수 : 0.994만 명('00년) → 1.3만 명('07년, 30.8% 증가)
- * '00년 대비 '07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8.3%, 17.2%

<사례 2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98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고 '99년 10월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하향조정
-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완화 기간 중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 급증
 - 사업체 수 : 1.9천 개('97년) → 5.7천 개('03년, 201.7% 증가)
 - 종사자 수 : 10만 명('97년) → 17.9만 명('13년, 79.3% 증가)
- * '97년 ~ '03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11.7%, 9.3%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반적인 진입규제 개선 추진 필요

- 진입률은 낮으면서 강 규제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대분류 기준 제조업에 소속, 진입률 7.3%, 강 진입규제 비중 66.7%) 등을 중심으로 진입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역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할 필요
 - * 예 : 변호사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업 참여제한 등

2. 진입규제 개혁방안

□ 모든 진입규제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법령상의 진입규제는 물론 중앙부처의 규정이나 고시, 지자체의 자치 규약, 각종 행정지도에 의한 진입규제 목록을 파악
- 진입규제 전수조사 목록에 기초하여 진입규제별 피 규제자를 대상으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부작용이 크고 개선방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규제의 일괄 개선 추진

□ 지속적인 진입규제 개혁을 위해 중장기 진입규제 개혁 로드맵 작성

- 지속적으로 진입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피 규제자의 진입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규제 개혁 중장기 로드맵 작성 추진
- 진입규제 개혁 중장기 로드맵 작성 시 특정 진입규제가 존속하는 기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명기된 기한까지의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
 - * 진입규제 로드맵에 담길 내용 예시 : 규제 존속이 필요한 특정 기한, 규제 존속이 필요한 이유, 규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기대 이익, 규제 존속 기간 동안의 규제개혁 방안 등
 - * 규제존속 기간 중에는 허가규제를 등록이나 승인 규제로 개선하거나, 진입허용이 불가한 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계획을 추진

□ 혁신적인 진입규제 개혁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활용

- 진입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강한 진입규제 중 인허가와 승인 규제를 중심으로 2~3년간 진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 규제유예에 따른 결과에 기초하여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

□ 모든 존속 진입규제에 대해 규제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기한 부여

- 모든 진입규제에 대해 특정기간(예 : 3년)이 경과하면 규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
- 규제신설의 관점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재검토 기한 도래 진입규제 중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규제 필요성이 약화된 진입규제는 폐지하도록 의무화

□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규제의 경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의무 부과

-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진입규제를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만 특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네거티브 방식전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지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

<부 록 I >

산업별 · 유형별 진입규제 현황

(단위 : 세세분류 하위 업종 중 규제받는 업종 수)

구분	강규제							약규제			규제합계	무규제	총합계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가	허가	승인	소계	등록	신고	소계			
A 농림어업	0	0	2	1	12	0	15	3	2	5	20	14	34
B 광업	0	0	0	0	13	0	13	2	0	2	15	2	17
C 제조	0	0	7	0	38	0	45	52	17	69	114	347	461
D 전기·가스·수도	0	0	0	2	7	0	9	0	0	0	9	0	9
E 폐기물·환경복원	0	0	0	0	9	0	9	5	0	5	14	1	15
F 건설	0	0	0	0	0	0	0	42	0	42	42	0	42
G 도·소매	0	2	1	0	12	0	15	27	17	44	59	105	164
H 운수	1	0	22	1	4	0	28	9	0	9	37	9	46
I 숙박·음식점	0	0	0	0	3	0	3	4	17	21	24	0	24
J 출판·영상·정보 등	1	1	0	0	6	0	8	6	13	19	27	15	42
K 금융·보험	7	0	0	10	8	0	25	7	0	7	32	1	33
L 부동산·임대	0	0	0	1	1	0	2	14	1	15	17	4	21
M 전문·과학·기술	0	0	0	0	5	0	5	12	10	22	27	23	50
N 사업시설·사업지원	0	0	0	0	2	0	2	6	3	9	11	10	21
O 행정·국방·사회보장	25	0	0	0	0	0	25	0	0	0	25	0	25
P 교육서비스	0	0	0	13	0	1	14	11	1	12	26	3	29
Q 보건·사회복지	1	0	1	1	5	0	8	0	13	13	21	0	21
R 예술·스포츠·여가	0	4	1	1	6	0	12	15	8	23	35	8	43
S 협회·수리·개인	0	0	0	1	9	0	10	9	14	23	33	10	43
T 자가소비 생산활동	0	0	0	0	0	0	0	0	0	0	0	3	3
U 국제·외국기관	2	0	0	0	0	0	2	0	0	0	2	0	2
서비스	37	7	25	28	70	1	168	125	97	222	390	192	582
전산업	37	7	34	31	140	1	250	224	116	340	590	555	1,145

주 1 : 서비스업은 전체산업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2 : 법령은 '15년 말 기준

<부 록 II>

산업별 · 유형별 진입규제 비중

(단위 : 세세분류 하위 업종 중 규제받는 업종 수 비중, %)

구분	강규제							약규제			규제합계	무규제	총합계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가	허가	승인	소계	등록	신고	소계			
A 농림어업	0.0	0.0	5.9	2.9	35.3	0.0	44.1	8.8	5.9	14.7	58.8	41.2	100.0
B 광업	0.0	0.0	0.0	0.0	76.5	0.0	76.5	11.8	0.0	11.8	88.2	11.8	100.0
C 제조	0.0	0.0	1.5	0.0	8.2	0.0	9.8	11.3	3.7	16.0	24.7	75.3	100.0
D 전기·가스·수도	0.0	0.0	0.0	22.2	77.8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E 폐기물·환경복원	0.0	0.0	0.0	0.0	60.0	0.0	60.0	33.3	0.0	33.3	93.3	6.7	100.0
F 건설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0.0	100.0
G 도·소매	0.0	1.2	0.6	0.0	7.3	0.0	9.1	16.5	10.4	26.8	36.0	64.0	100.0
H 운수	2.2	0.0	47.8	2.2	8.7	0.0	60.9	19.6	0.0	19.6	80.4	19.6	100.0
I 숙박·음식점	0.0	0.0	0.0	0.0	12.5	0.0	12.5	16.7	70.8	87.5	100.0	0.0	100.0
J 출판·영상·정보 등	2.4	2.4	0.0	0.0	14.3	0.0	19.0	14.3	31.0	45.2	64.3	35.7	100.0
K 금융·보험	21.2	0.0	0.0	30.3	24.2	0.0	75.8	21.2	0.0	21.2	97.0	3.0	100.0
L 부동산·임대	0.0	0.0	0.0	4.8	4.8	0.0	9.5	66.7	4.8	71.4	81.0	19.0	100.0
M 전문·과학·기술	0.0	0.0	0.0	0.0	10.0	0.0	10.0	24.0	20.0	44.0	54.0	46.0	100.0
N 사업시설 사업지원	0.0	0.0	0.0	0.0	9.5	0.0	9.5	28.6	14.3	42.9	52.4	47.6	100.0
O 행정·국방·사회보장	10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P 교육서비스	0.0	0.0	0.0	44.8	0.0	3.4	48.3	37.9	3.4	41.4	89.7	10.3	100.0
Q 보건·사회복지	4.8	0.0	4.8	4.8	23.8	0.0	38.1	0.0	61.9	61.9	100.0	0.0	100.0
R 예술·스포츠·여가	0.0	9.3	2.3	2.3	14.0	0.0	27.9	34.9	18.6	53.5	81.4	18.6	100.0
S 협회·수리·개인	0.0	0.0	0.0	2.3	20.9	0.0	23.3	20.9	32.6	53.5	76.7	23.3	100.0
T 자가소비 생산활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U 국제·외국기관	10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서비스	6.4	1.2	4.3	4.8	12.0	0.2	28.9	21.5	16.7	38.1	67.0	33.0	100.0
전산업	3.2	0.6	3.0	2.7	12.2	0.1	21.8	19.6	10.1	29.7	51.5	48.5	100.0

주 : 서비스업은 전체산업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부 록 Ⅲ>

강 진입규제 개혁에 따른 업종별 일자리 창출 사례

강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업종별 일자리 창출효과(요약)

구분	관련법	진입규제 완화시점	규제완화 내용	규제변화 효과(증가율, %)		
				사업체	종사자	비교 기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법	'00.7	허가 → 신고	105.0(8.3)	30.8(17.2)	'00 ~ '07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8.6	면허 → 등록	201.7(11.7)	79.3(9.3)	'97 ~ '03
택배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8.6	면허 → 등록	150.0(5.8)	72.9(8.3)	'00 ~ '03
기타 식품품 제조업	식품위생법	'99.11	허가 → 신고	26.0(9.5)	30.4(17.2)	'99 ~ '05
기타음식점 (피자 햄버거 치킨)	식품위생법	'99.11	허가 → 신고	72.2(9.5)	63.4(17.2)	'99 ~ '05
한식점업	식품위생법	'99.11	허가 → 신고	13.2(9.5)	33.8(17.2)	'99 ~ '05
기관 구내식당업	식품위생법	'99.11	허가 → 신고	278.9(9.5)	361.1(17.2)	'99 ~ '05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비료관리법	'97.1	허가 → 등록	51.9(12.3)	54.6(12.5)	'97 ~ '05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차관리법	'97.9	허가 → 등록	83.5(12.3)	68.0(12.5)	'97 ~ '05
슈퍼마켓	유통산업 발전법	'97.7	허가 → 등록	41.8(12.3)	37.4(12.5)	'97 ~ '05
체인화 편의점	유통산업 발전법	'97.7	허가 → 등록	359.3(12.3)	265.5(12.5)	'97 ~ '05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화물유통촉 진법(구법)	'96.6	허가 → 등록	55.2(14.1)	259.5(8.1)	'96 ~ '05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법	'99.7	허가 → 등록	77.4(9.5)	70.1(17.2)	'99 ~ '05
인력 공급업	직업안정법	'99.5	허가 → 등록	96.3(9.5)	253.3(17.2)	'99 ~ '05
영화관 운영업	공연법, 영화진흥법	'99.5	허가 → 신고	16.1(9.5)	214.6(17.2)	'99 ~ '05
미용업	공중위생법 (구법)	'96.6	허가 → 신고	23.4(14.1)	31.0(8.1)	'96 ~ '05

주 : 사업체와 종사자의 () 안은 같은 기간 전산업 평균 통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와 운수업조사 통계에 기초하여 계산

<사례 1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제조업은 본래 약사법에 의해 허가 업종으로 규제를 받아오다 '00년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의해 신고제로 변경됨(화장품법 제3조, '00.7.1일 시행)
- 완화(허가 → 신고) 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대폭 증가
 - 사업체 수 : 220개('00년) → 451개('07년, 105.0% 증가)
 - 종사자 수 : 0.994만 명('00년) → 1.3만 명('07년, 30.8% 증가)
- * '00년 대비 '07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8.3%, 17.2%

<사례 2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98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고 '99년 10월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98.6.14일 시행)
-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완화기간 중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 급증
 - 사업체 수 : 1.9천 개('97년) → 5.7천 개('03년, 201.7% 증가)
 - 종사자 수 : 10만 명('97년) → 17.9만 명('13년, 79.3% 증가)
- * '97년 ~ '03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11.7%, 9.3%

<사례 3 : 택배업>

- '98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98.6.14일 시행)
 - 사업체 수 : 6개('00년) → 15개('03년, 150.0% 증가)
 - 종업원 수 : 4.1천 명('00년) → 7.0천 명('03년, 72.9% 증가)
- * '00년 ~ '03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5.8%, 8.3%
- * '00년 ~ '03년 중의 규제개혁 효과를 측정한 이유는 '00년부터 운수사업조사에 의해 택배업에 대한 별도 통계자료가 존재하며 '04년부터 등록제가 허가제로 재변경되었기 때문

<사례 4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99년부터 관련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99.11.13일 시행)
 - 사업체 수 : 1.4만 개('99년) → 1.8만 개('05년, 26.0% 증가)
 - 종업원 수 : 4.1만 명('99년) → 5.3만 명('05년, 30.4% 증가)
- * '99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9.5%, 17.2%

<사례 5 : 기타음식점업(피자·햄버거·치킨 전문점)>

- '99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99.11.13일 시행)
 - 사업체 수 : 1.9만 개('99년) → 3.3만 개('05년, 72.2% 증가)
 - 종업원 수 : 5.9만 명('99년) → 9.7만 명('05년, 63.4% 증가)
- * '99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9.5%, 17.2%

<사례 6 : 한식점업>

- '99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99.11.13일 시행)
 - 사업체 수 : 24.1만 개('99년) → 27.3만 개('05년, 13.2% 증가)
 - 종업원 수 : 55.4만 명('99년) → 74.1만 명('05년, 33.8% 증가)
- * '99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9.5%, 17.2%

<사례 7 : 기관 구내식당업>

- '99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99.11.13일 시행)
 - 사업체 수 : 0.9천 개('99년) → 3.4천 개('05년, 278.9% 증가)
 - 종업원 수 : 0.6만 명('99년) → 2.9만 명('05년, 361.1% 증가)
- * '99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9.5%, 17.2%

<사례 8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97년부터 비료 생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비료 관리법 제11조, '97.1.1일 시행)
 - 사업체 수 : 3.4백 개('97년) → 5.2백 개('05년, 51.9% 증가)
 - 종업원 수 : 2.6천 명('97년) → 4.0천 명('05년, 54.6% 증가)
- * '97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12.3%, 12.5%

<사례 9 : 중고자동차 판매업>

-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이 '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자동차관리법 제53조, '97.9.8일 시행)
 - 사업체 수 : 1.9천 개('97년) → 3.4천 개('05년, 83.5% 증가)
 - 종업원 수 : 1.2만 명('97년) → 2.0만 명('05년, 68.0% 증가)
- * '97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12.3%, 12.5%

<사례 10 : 슈퍼마켓>

- '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97.7.1일 시행)
 - 사업체 수 : 5.0천 개('97년) → 7.0천 개('05년, 41.8% 증가)
 - 종업원 수 : 4.0만 명('97년) → 5.5만 명('05년, 37.4% 증가)
- * '97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12.3%, 12.5%

<사례 11 : 체인화 편의점>

- '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97.7.1일 시행)
 - 사업체 수 : 1.9천 개('97년) → 8.9천 개('05년, 359.3% 증가)
 - 종업원 수 : 1.0만 명('97년) → 3.6만 명('05년, 265.5% 증가)
- * '97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12.3%, 12.5%

<사례 12 :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96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화물유통촉진법(구법) 제24조, '96.6.30일 시행)
 - 사업체 수 : 29개('96년) → 45개('05년, 55.2% 증가)
 - 종업원 수 : 289명('96년) → 1,039명('05년, 259.5% 증가)
- * '96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14.1%, 8.1%

<사례 13 : 부동산 중개업>

- '99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99.7.1일 시행)
 - 사업체 수 : 4.0만 개('99년) → 7.0만 개('05년, 77.4% 증가)
 - 종업원 수 : 7.0만 명('99년) → 11.9만 명('05년, 70.1% 증가)
- * '99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9.5%, 17.2%

<사례 14 : 인력 공급업>

- '99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직업안정법 제19조, '99.5.9일 시행)
 - 사업체 수 : 1.5천 개('99년) → 3.0천 개('05년, 96.3% 증가)
 - 종업원 수 : 5.5만 명('99년) → 19.6만 명('05년, 253.3% 증가)
- * '99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9.5%, 17.2%

<사례 15 : 영화관 운영업>

- '99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공연법 제7조, '98.1.1일 시행 → 영화진흥법 제4조, '99.5.9일 시행)
 - 사업체 수 : 341개('99년) → 396개('05년, 16.1% 증가)
 - 종업원 수 : 2.5천 명('99년) → 7.8천 명('05년, 214.6% 증가)
- * '99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9.5%, 17.2%

<사례 16 : 미용업>

- '96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공중위생법(구법) 제4조, '96.6.30일 시행)
 - 사업체 수 : 6.8만 개('96년) → 8.4만 개('05년, 23.4% 증가)
 - 종업원 수 : 10.1만 명('96년) → 13.3만 명('05년, 31.0% 증가)
- * '96년 ~ '05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14.1%, 8.1%

<부 록 IV>

산업별 진입규제의 유형 및 근거법령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록	종자산업법 제37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11	젖소 사육업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01212	육우 사육업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01220	양돈업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01231	양계업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01291	말 및 양 사육업	등록	축산법 제22조 제2항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신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신고	축산법 제17조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허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 제23조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 제16조		
02012	육림업	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 제36조		
02020	벌목업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 제3조, 제22조		
02030	임산물 채취업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 제3조, 제22조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3111	원양 어업	허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03112	연근해 어업	허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03120	내수면 어업	허가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1항		
03211	해면 양식 어업	면허	수산업법 제8조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면허	수산업법 제8조		
03213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허가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3호		
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				
05100	석탄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6100	철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62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6291	금은 및 백금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6292	연 및 아연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6299	그외 기타 비철금속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7111	석회석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허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등록	골재채취법 제2조, 골재채취법 제14조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등록	골재채취법 제2조, 골재채취법 제14조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제15조 제1항
07220	소금 채취업	허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허가	광업법 제3조, 광업법 제15조 제1항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10110	도축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22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2호, 제21조 제2호, 시행규칙 별표15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611	곡물 도정업	신고	양곡관리법 제2조, 제19조 제1항
10612	곡물 제분업	신고	양곡관리법 제2조, 제19조 제1항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신고	양곡관리법 제2조, 제19조 제1항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신고	양곡관리법 제2조 제5호, 제19조 제1항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신고	양곡관리법 제2조 제5호, 제19조 제1항
10711	떡류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12	빵류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20	설탕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10743	장류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91	커피 가공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92	차류 가공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제5조 제1항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등록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항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면허	주세법 제6조
11112	청주 제조업	면허	주세법 제6조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면허	주세법 제6조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면허	주세법 제6조
11121	주정 제조업	면허	주세법 제6조
11122	소주 제조업	면허	주세법 제6조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면허	주세법 제6조
11201	얼음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11202	생수 생산업	허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2
12001	담배 재건조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허가	담배사업법 제11조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족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등록	식물방역법 제40조 제1항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2	돛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7호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111	경 인쇄업	신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18112	스크린 인쇄업	신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18119	기타 인쇄업	신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16조 제1항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등록	석탄산업법 제17조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등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등록	비료관리법 제11조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등록	비료관리법 제11조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등록	비료관리법 제11조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불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3조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법 제3조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방향제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허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허가	약사법 제31조
21220	한의학약품 제조업	허가	약사법 제31조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약사법 제31조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허가	약사법 제31조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 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7호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7호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7호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1	중앙난방 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허가	총포·도포·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신고	약사법 제31조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신고	약사법 제31조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등록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등록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등록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등록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등록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27310	안경 제조업	등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등록	고압가스안전법시행령 제5조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28202	축전지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10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조, 제25조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허가	사행행위처벌법 제4조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3호, 제11조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등록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 제40조 제1항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35112	수력 발전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35113	화력 발전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35119	기타 발전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35120	송전 및 배전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35300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허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인가	수도법 제17조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인가	수도법 제17조
37011	하수 처리업	등록	하수도법 제19조의2
37012	폐수 처리업	등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62조
37021	분뇨 처리업	허가	하수도법 제45조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허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813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등록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 제32조 제1항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등록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등록	법 제32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112	아파트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221	도로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226	조경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21	토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31	철골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32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33	조적 및 석축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34	포장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35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36	수중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203	방음 및 내화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사업법 제4조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사업법 제4조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14조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14조
42411	도장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499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2500	건설장비 운영업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2호,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3조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관리법 제53조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록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 제32조 제1항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등록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29조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등록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4610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46104	기계장비 중개업		
46105	상품종합 중개업		
46109	기타 상품 중개업		
46201	곡물 도매업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등록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 제37조 제1항
46203	사료 도매업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46205	산동물 도매업	등록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3조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등록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 1호, 제13조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46312	육류 도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1항
46313	수산물 도매업		
46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1항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 및 과자 도매업		
46324	낙농품 도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9호, 21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1항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면허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46332	비알콜음료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등록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46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46415	내의 도매업		
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46417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46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46431	가정용 가구 도매업		
46432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46433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46439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46441	의약품 도매업	허가	약사법 제31조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허가	약사법 제31조
46443	화장품 도매업	등록	화장품법 제3조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2조 제9호, 제16조 제1항
46462	악기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조 1호 및 제3호, 제25조 제1항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46499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조 1호 및 제3호, 제25조 제1항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46522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3조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2호, 제21조 제1항
46533	공작기계 도매업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동물용의약품 등취급규칙 제23조 제1항
46593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465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466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46691	도로 도매업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466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허가	원자력법 제43조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허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4673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허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46741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46742	직물 도매업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46799	그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지정	대외무역법 제8조의2
47111	백화점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47121	슈퍼마켓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47122	체인화 편의점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47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211	곡물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1항
47213	수산물 소매업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47215	빵 및 과자류 소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47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허가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47221	음료 소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47222	담배 소매업	지정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5조 제1항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47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12	한복 소매업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5	내의 소매업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47420	신발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47520	가구 소매업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47593	악기 소매업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16조 제1항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5조 제1항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등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2조 제2항 제4호,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4781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등록	화장품법 제3조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소매업	등록	의료기사등에관한법 제1조의2 제3호, 제12조 제1항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록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2조 제7호, 제3조 제2항
47861	중고가구 소매업		
4786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47869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업	신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2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2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 제1항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2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 제1항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신고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49100	철도운송업	면허	철도사업법 제5조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면허	도시철도법 제26조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49231	택시 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49233	장의차량 운영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49390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49401	택배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49402	늘찬 배달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인가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0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020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0203	항만내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면허	해운법 제4조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면허	항공법 제112조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면허	항공법 제112조
52101	일반 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의2 제1항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의2 제1항
52103	농산물 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의2 제1항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의2 제1항
52911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등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 제7조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허가	도로법 제36조
52915	주차장 운영업		
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1	공항 운영업	정부독점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면허	항공법 제112조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4조 제1항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4조 제1항
5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55111	호텔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조 제1항
55112	여관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조 제1항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등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제1항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55901	기숙사 운영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항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항
56111	한식 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12	중식 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13	일식 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20	기관구내식당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32	이동 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91	제과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93	치킨 전문점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2호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2호
56219	기타 주점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2호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신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58112	만화 출판업	신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신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58121	신문 발행업	등록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록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 제16조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신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 제15조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신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허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조 제6호, 제26조 제1항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허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조 제6호, 제26조 제1항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26조 제1항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26조 제1항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57조 제1항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신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1조 제1항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신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57조 제1항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신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57조 제1항
59141	영화관 운영업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36조 제1항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58조 제1항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16조 제1항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허가	방송법 제9조
60210	지상파 방송업	허가	방송법 제9조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신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20호 시행령 제1조
60222	유선방송업	허가	방송법 제9조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허가	방송법 제9조
61100	우편업	정부독점	우편법 제2조
61210	유선통신업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61220	무선통신업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61230	위성통신업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61291	통신 재판매업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63910	뉴스 제공업	허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4조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지정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639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4110	중앙은행	정부독점	한국은행법
64121	국내은행	인가	은행법 제8조
64122	외국은행	인가	은행법 제8조
64131	신용조합	인가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
64132	상호저축은행	인가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64139	기타 저축기관	정부독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 제3조
64201	자산운용회사	인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12조
64209	기타 투자기관	인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12조
64911	금융리스업	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12조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64912	개발금융기관	정부독점	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허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등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제3조 제1항
64991	기금 운영업	정부독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64992	금융지주회사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64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65110	생명 보험업	허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65121	손해 보험업	허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65122	보증 보험업	허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65131	건강 보험업	정부독점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정부독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3조
65200	재 보험업	허가	보험업법 제4조
65301	개인 공제업	허가	보험업법 등
65302	사업 공제업	허가	보험업법 등
65303	연금업	허가	보험업법 등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정부독점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등
66121	증권 중개업	인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11조
66122	선물 중개업	인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시행령 별표1
66191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인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별표1
66192	투자 자문업	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별표3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제2조의3 제1항
66201	손해사정업	등록	보험업법 제187조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등록	보험업법제 87조 제1항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등록	보험업법 제183조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록	임대주택법 제6조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록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 제4조 제1항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록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 제4조 제1항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록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 제4조 제1항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록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 제29조 제1항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록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 제29조 제1항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등록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인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제28조 제4항
69110	자동차 임대업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등록	해운법 제23조, 항공법 제140조 등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69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2조 제16조, 제58조 제1항
69291	서적 임대업		
69292	의류 임대업		
692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69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록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허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 제13조 제2항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허가	의료법 제48조·49조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101	변호사업	등록	변호사법 제7조
71102	변리사업	등록	변리사법 제5조
71103	법무사업	등록	법무사법 제7조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신고	행정사법 제10조
71201	공인회계사업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7조
71202	세무사업	등록	세무사법 제6조
71209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71310	광고 대행업	허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 제6조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허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 제6조
71393	광고물 작성업	등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등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11	제조업 회사본부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71520	비금융 지주회사	신고	공정거래법 제8조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록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 제14조 제1항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록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72921	측량업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72922	제도업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72924	지도제작업	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 제44조
73100	수의업	허가	수의사법 제22조의2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3901	매니저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허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110	고용알선업	등록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75120	인력공급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75212	국내 여행사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허가	경비업법 제4조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록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11	문서 작성업		
75912	복사업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허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75994	포장 및 충전업	등록	화장품법 제3조
7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84111	입법기관	정부독점	국회법 제1조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정부독점	정부조직법 제1조, 정부조직법 제2조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정부독점	정부조직법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84211	교육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지방교육행정 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213	환경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221	노동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222	농림수산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224	통신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310	외무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320	국방 행정	정부독점	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
84401	법원	정부독점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84402	검찰	정부독점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84403	교도기관	정부독점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2항
84404	경찰	정부독점	정부조직법 제34조 제4항
84405	소방서	정부독점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제3조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정부독점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제3조
84500	사회보장 행정	정부독점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 등
85110	유아 교육기관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85120	초등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211	중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212	일반 고등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222	공업 고등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301	전문대학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302	대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303	대학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410	특수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420	외국인 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430	대안학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85501	일반 교과 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502	외국어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503	방문 교육 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509	기타 일반 교습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612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제20조
85620	예술 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630	사회교육시설		
85640	직원훈련기관	승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85651	운전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85691	컴퓨터 학원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등록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6조 제1항
8570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6101	종합 병원	허가	의료법 제48조
86102	일반 병원	허가	의료법 제48조
86103	치과 병원	허가	의료법 제48조
86104	한방 병원	허가	의료법 제48조
86201	일반 의원	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
86202	치과 의원	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
86203	한의원	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
86204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신고	의료법 제37조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정부독점	지역보건법 제7조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허가	응급의료에관한법 제51조
86902	유사 의료업	면허	의료법 제81조
86909	그외 기타 보건업	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신고	노인복지법 제35조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신고	노인복지법 제32조-제33조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신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87139	그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신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 제13조
8729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등록	공연법 제9조
90121	연극단체	지정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지정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90123	기타 공연단체	지정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면허	공연법 제14조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등록	도서관법 제31조
90212	독서실 운영업	등록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 제 6조
90221	박물관 운영업	등록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54조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등록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 제9조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허가	자연공원법 제20조

분류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허가	천연동굴보전관리지침 제26조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등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13	경주장 운영업	등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21	골프장 운영업	등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22	스키장 운영업	등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33	수영장 운영업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인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3조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허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6조 제1항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허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6조 제1항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18조 제1항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허가	낚시관리및육성법 제10조 제1항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록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 제28조의2 제1항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갠블링 및 베틱업	허가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91291	무도장 운영업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록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 제12조 제2항
94110	산업 단체	인가	산업발전법 제38조
94120	전문가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4200	노동조합	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94911	불교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4912	기독교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4913	천주교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4914	민족종교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4919	기타 종교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4920	정치 단체	등록	정당법 제4조
94931	환경운동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허가	민법 제32조
951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분류 코드	업종명	진입규제	근거법령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95122	통신장비 수리업		
95123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3조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3조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시행규칙 제106조의3
95310	가전제품 수리업		
95391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 제품 수리업		
95392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53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6111	이용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112	두발미용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113	피부미용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119	기타미용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121	욕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122	마사지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911	산업용 세탁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912	가정용 세탁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913	세탁물 공급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항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록	할부거래에관한법 제18조 제1항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
96994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등록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 제4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96995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록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7000	가구내 고용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9001	주한 외국공관	정부독점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정부독점	

참고문헌

김종호 외/산업연구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혁 방안 : 진입규제 개혁의 창업, 고용, 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09.12

김재홍/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시리즈 40 :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02

나성현 외/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익산업에서의 진입 및 M&A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 : 기간 통신사업자 허가 및 M&A 규제제도를 중심으로, '08.12

통계청, 사업체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 '10

이병희 외/한국은행,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 분석, '07.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09.9.29

법제연구원,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문화관광분야), '10.11

김종호,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08.12

유진근/산업연구원, 진입규제 완화 업종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0.2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15.2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기업 진입·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 개혁과제, '14